#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5 2017년 09월 0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명희 의원 외 11명

나. 제 안 일 : 2017년 8월 14일

다. 회 부 일 : 2017년 8월 17일

라. 상 정 일 : 제26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명희 의원)

####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가 명확하도록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함(안 제3조).
-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안 제6조, 제12조, 제18조).
- 조·항·목의 순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안 제2조, 제3 조. 제17조).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 법을 추가함(안 제16조).
- 구청장의 권한 침해 부분을 삭제함(안 제17조,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도 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2017.8.22.~ 8.29)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용어와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고, 공공급식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용어 및 정의 수정
- ·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
- ·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
- · 조·항·목의 순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
-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추가함.
- ·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 본 조례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급식 질의 저하, 농촌경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한 식재료 공급과 도농상생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 가. 용어의 조문의 수정 및 보완

- 안 제1조 및 제2조의 용어 변경은 다양한 형태(독거노인 도시락 급식 등)의 급식을 포괄하기 위해 '단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한 것이며,
- 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우수한 식재료'는 농약과 유해물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우수 식재료(GAP)'와 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 안 제2조 제3호 바목은 제3호 중 마목이 누락되어 있어, 조·항·목의 순서에 맞게 바로 잡고, 제3조제8호는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 지난 4월10일 개최되었던 토론회에서도 용어의 재정의 및 통일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 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의 '우수 식재료'는 토론회에서 제초제·비료 등을 과학적 관리방법에 의해 사용하여 재배된 작물(GAP)과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친환경 식재료와 의미상 혼돈을 줄 수 있는 바, 용어를 '우수한 식재료'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안 제6조제2항, 제12조, 제18조제1항은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인용조항	내 용	개정필요
안 제6조제2항	제11조	공공급식위원회	제9조
안 제12조	제13조제4항	위촉직 위원	제11조제4항
안 제18조제1항	제21조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제17조

### 나. 위원회 운영

○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 시장의 책무의 변경 및 자치구청장의 권한

○ 안 제3조제5호는 조례 중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바,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 식재료 안전성 관리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7조제3항은 구청장이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시장이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침해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이루어지는 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생교류"를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하며, "농림 수산물"을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우수 식재료"를 "우수한 식재료"로 하고, "농·수·축산물(이하 "농수 산물"이라 한다)"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유관기관"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먹거리"를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로 하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을 "지 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우수"를 "우수한"으로 하고,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경비"를 "경비에 대해일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를 "우 수한"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제4항제5호 중 "추천한 학부모"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 중 "제13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3항 (종전의 제2항)제5호 중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을 "도농 상생을 실현하는"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하여"를 "위하여 구청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33조,「아동복지법」제4조·제35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u>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u> 을 말한다. 2. <u>"상생교류"</u> 란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간"이라 한다)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 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 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 전한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바.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 5. (생략)

1. ~ 4. (생략)

-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 6.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 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7.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생산지 지방 의 협력 및 지원
- 7.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8.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프로그램 운 옂
- 8.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 9. 그 밖에 시장이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	7] <del>7</del> ] 6	그 이 게 된 수	211 2 1 <del>-</del> 1	⊸ો <b>પો</b> ⊸ો
(Z)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시	시 맛사

<u>농·</u> 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 <u>이라 한다)</u>
 3. <u>"우수한 식재료"</u>
<u>농수산물</u>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u>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 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

지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 보고한다. ③ (생략)	
료를 사용하는 등 <u>급식</u> 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u>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u> <u>행하는</u>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u>우수</u>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u>제9조</u> 에 
제11조(구성) ① (생 략) ② <u>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u> <u>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u> <u>한다</u> . ③ (생 략) ④ (생 략) 1. ~ 4.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l> <li>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u>추천한 학부모</u></li> <li>6. ~ 8. (생략)</li> <li>⑤ (생략)</li> </ul>	5 <u>추천한 사람</u> 6.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u>제13</u> <u>조제4항에</u>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신설 >	<del></del>
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생략) < 신 설 >	과 같음)
<ul> <li>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li> <li>1. ~ 4. (생략)</li> <li>5.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li> <li>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li> </ul>	<u>3</u>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시장 및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u>제</u> 2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생 략)	
제19조(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 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u>제20조</u>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 ② (생 략)	<u>제19조</u>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u>제21조</u>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0조</u> (시행규칙) 